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3.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 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5. 검토내용

○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를 하도록 2019년 5월 17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가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가 의무화 되어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21. 8. 20. ~ '21. 9. 1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